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북부지회



수 신 사업장 대표

(경 유) 안전관리업무 담당자

제 목 2026년 안전관리업무 수수료 인상 안내

1. 귀사의 무재해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3. 그에 따른 안전관리업무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에 의한 실비정액기산방식을 적용하여, 통계법에 의해 매년 공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협회는 「2024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부득이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귀사에 더욱 향상된 기술지원과 서비스로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붙임 2026년 안전관리업무 수수료 공표문. 끝.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북부지회장



기 안 자 주임 09/25 윤효준 부장 09/25 박희윤 지회장 09/25 김우현

협조자

시행 충북북부안전기술부-11271 (2025. 9. 25.) 접수 ()
우 27352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368 (연수동)나동 2층 / <https://www.safety.or.kr>
전화 043-855-5171 / 팩스 043-855-5174 / 이메일 dbsgywns486@safety.or.kr / 공개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공표

안전관리업무 수수료

본 협회는 「2024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에 의해 산출된 안전관리업무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안전관리업무 수수료

구 분	월간 수수료
근로자 1명당	7,100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적용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5년 9월 15일

(사)대한산업안전협회장

